

##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

이영환(건국대 정보통신기술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 촘촘히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통금지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약탈적 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그에 의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다. 본 토론에서는 특히 개인정보가 차단될수록 안전하다는 식의 오도된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에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과도하게 금지되어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사업자를 빅데이터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유통 허용이다. 비식별화를 할 경우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식별화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데 있다. 더군다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컴퓨팅파워는 날로 재식별화 기술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하자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모순성을 논의하고 이 법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한다.

본 토론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 제안된 바 있는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 해답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27개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의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옵트아웃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